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3.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11. 20.

기획 행정 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총무과)
- 제출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2.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3.(금) ~ 11. 10.(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장기근속·퇴직자 일률적 지원 등 관행 개선) 반영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세부내용 보완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정비(안 제6조, 제13조)
-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별도 편성근거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10. 4.~10. 24.)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 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별도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치료중인’에서 ‘‘투병이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으로 격려금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2022. 12. 7.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7. 28.] [2023. 7. 28. 일부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호(생략)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②(생략)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23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의 안 명: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 의 결 일: 2021. 4. 12.
- 주요내용

과제 내용	조치사항
1. 장기근속퇴직(예정)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후생복지 관련 조례 반영)
2.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현 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1. “소속공무원” 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직 근로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 매점 ·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 콘도 ·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2022. 4. 1., 2023. 4. 3.)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 · 체육 활동 지원
3.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4. 정년 ·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7. 건강검진비 지원
8.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경비 지원
9.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장제 시 장제용품 등 지원
10.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11.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 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되는 항목
- 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 ·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구청장은 구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4. 1.)

[제목개정 2023. 4. 3.]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 운영

제1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불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